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7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6. 1. 22.

고 명 욱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 고명욱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6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명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6002
----------	----------

발의연월일: 2026. 1. 22.

발 의 자: 고명욱 이진환 최홍린
서보영 황국주 도하석
박정환

1. 제안이유

-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5조)
-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안 제6조 ~ 제7조)
- 라. 포상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제10조
-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충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교육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 9. 18., 2021. 10. 26., 2022. 12. 27., 2023. 12. 12.>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 9. 18., 2022. 12. 27., 2023. 7. 7.>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11.>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18.>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⑦ ~ ⑧ (생략)